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9745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4346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9745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 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47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9. 피고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내용 발췌).

"갑" (주) C

대표이사 B

"을" B

"병" A

B(이하 "을")과 A(이하 "병")는 주식회사 C(이하 "갑")의 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양도범위 및 양도금액)

"병"은 "갑"의 보유주식 72,359좌수와 "병"의 부인 D의 보유주식 38,090좌수를 "을"에 양도하며, "갑"의 경영 지분 50%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일금 일십 이억 원(12억 원)에 "을"에게 포괄양도 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주식대금 및 대여금 지급 대금)

〈"갑"의 "병" 종업원대여금을 2011년 이익잉여금 처리로 회계처리〉

1. "병" 소유의 "갑"의 권리를 "병"에게 취득가 양도 일금 일억 이천만 원 (120백만 원)
2. 대여금 현재 일금 사천구십만 원 (40,900,000원)

계 (160,900,000원)

<"을"의 주식인수대금 지불 완료>

3. 2010년 3월 31.일 일금 오천만 원 (50,000,000원)

4. 2010년 7월 8.일 일금 삼천만 원 (30,000,000원)

5. 2010년 9월 20.일 일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6. 2010년 10월 20.일 일금 일억 원(100,000,000원)

7. 2010년 10월 29.일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

소계 (390,000,000원)

합계 (550,900,000원)

8.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약 일금 일억 일천만 원(110,000,000원), 배당세(35%) 예상액이
일금 삼억 팔천 오백만 원(385,000,000원) 세액계산 변경시 공제액도 변경한다.

9. 상법에 따른 잉여금 처분에 관한 이익배당은.. (중략)...

"병"에게 지급할 금액 중 총지급 예정금액의 미지급잔액은 특허발명기술료를 포함하여 일금 일억
오천 사백 일십만 원(154,1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1. 2. 28.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주식양도세
24,748,000원, 증권거래세 3,075,250원, 원고의 처인 D 소유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주식양도세 13,081,490원, 증권거래세 1,618,820원 합계 42,522,68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2011. 9. 30.자 합의서

1. A는 (주)C을 퇴사하면서.. (중략)..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그것으로써
A와 D의 모든 주식 지분과 퇴직금 등이 모두 지불되었음을 확인하며.. (중략).. (주식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납부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4. 본 합의서는 B와 A가 상호 신뢰속에 합의한 내용으로 반드시 서로 합의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그

약속의 보장으로 B은 A에게 차용해 준 차용금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 2011. 9. 확인서

"을"과 "병"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주)C 보유 주식 전부와 "을"이 보유한 (주)C의 경영권 50%

지분에 대한 전부를 "갑"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 제8항에 따라 4억 9,500만 원에서 원고와 D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추후 확정되어 피고가 납부한 세금은 합계 42,522,680원¹⁾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452,477,320원(= 495,000,000원 - 42,522,6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세금을 납부한 다음날인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한편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2조 제9호의 미지급 잔액의 변제와 관련한 것일 뿐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2조 제8호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도대금 12억 원 중 1,045,900,000원은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잔액을 154,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잔액을 초과한 172,055,310원²⁾ 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다.

② 설령 배당세와 관련한 정산이 남아 있더라도 향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 3억 8,5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관련한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세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중 4억 9,500만 원을 선공제하고, 세액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공제액을 변경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그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위와 같은 세액의 확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합의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양도대금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건주

판사양우진

판사신봄메

- 1) 원고는 배당세와 관련하여 상법상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에 따라 배당세가 부과될 것을 예정하고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세 명목으로 공제할 세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0.부터 2011. 2. 28.까지 112,055,31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공제될 금액이 과대 책정되었다며 당초 약정한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합의서 등에 따라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